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간자격의 동일 명칭 사용금지 및 재등록 근거 신설〉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0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위상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3.
3. 회부연월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등록자격과 등록자격 중 주무부장관이 공인하는 공인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을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자격은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이 중복으로 행정청에 등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격 간 중복, 자격 취득자의 혼선과 함께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민간자격 등록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민간자격 중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거나 허위·과장된 정보가 공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의 제재나 관리는 부실한 실정임.

이에 주무부장관에게 동일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못하도

록 하고 민간자격을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 등록취소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자격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3 등).

Ⅲ. 검토의견

1. 민간자격 동일명칭 사용금지 및 재등록 제도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민간자격 등록 시 타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민간자격을 재등록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이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다른 민간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민간자격관리자는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재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운영 및 등록·재등록에----- -----.

나. 검토의견

-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1)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는데, 현행법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 동법 제17조제1항 각 호2)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민간자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간자격은 한 번 등록하면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재등록 절차 없이 등록이 유지³⁾됨.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관리자가 해당 자격의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폐지를 신고

-
- 1)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2)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3) 「자격기본법」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전체 민간자격 현황('26.4. 기준)을 살펴보면, 민간자격은 총 63,027종으로 이 중 99종이 「자격기본법」 제19조4)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하는 공인민간자격임. 2025년에는 7,369건이 등록되었고, 2,721건이 폐지되었음.

【 전체 자격 현황(2026.4.3. 기준) 】

구분		자격종목 수	관련법	자격명칭(예시)
국가자격	국가자격	549	개별법령	의사(의료법) 변호사(변호사법),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등
	국가기술자격	540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기술·기능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서비스분야(전산회계운용사 등)
	계	1,089	-	-
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63,027	자격기본법 제17조 (주무부장관)	진로상담사, 동화구연지도사, 심리상담사, 필라테스지도자 등
	공인민간자격	99종	자격기본법 제19조 (교육부외 18개 부처)	TEPS, 도로교통감정사, 지능형홈관리사 등
	계	63,027	-	-

* 교육부(11,642종, 18.5%), 문체부(21,316종, 33.8%), 복지부(8,072종, 12.8%), 농림부(6,318종, 10.0%), 산자부(3,347종, 5.3%) 등

【 민간자격 등록 현황(2026.4.3. 기준) 】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4
등록	6,253	6,521	6,153	6,302	5,849	6,869	6,079	6,056	5,572	6,176	6,398	7,369	3,222
폐지	223	1,400	932	1,357	2,315	1,856	2,515	1,987	2,270	2,121	2,132	2,721	2,862
누적	12,803	17,913	23,133	28,077	31,611	36,624	40,188	44,257	47,559	51,614	55,880	60,528	63,027

자료: 교육부

□ 최근 10여 년간 매년 약 5천 건 이상의 민간자격이 신규 등록되는 등 민간자격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유사한

4)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자격이 중복하여 신설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자격도 등록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등 민간자격의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직업능력연구원⁵⁾에 따르면 등록민간자격 중 현재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자격이 약 30%에 이르고, 등록 이후 한 번도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자격도 약 10%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부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의 공신력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홍보하거나 충분한 검정 절차 없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부실·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사례⁶⁾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신설되는 민간자격이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동일 명칭의 민간자격이 중복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②민간자격관리자가 3년의 범위에서 민간자격을 재등록하도록 하여 민간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6년 4월 기준 전체 등록민간자격 63,027종 중 다른 민간자격과 동

5) 「민간자격 운영 현황과 등록갱신제 도입 필요성」(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10.)

6) 이수민, 김송현, 「“3시간만 들으면 합격증 챙겨”... 스펙 뺑튀기 중심엔 우후죽순 민간자격증」, 매일경제, 2025.6.8.

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자격은 36,222종으로 전체의 5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명칭 사용 등록민간자격 관련 통계(26.4.3. 기준) 】

구분	전체 민간자격	동일명칭 사용 민간자격*
등록 자격 수	63,027	36,222
비율	100%	57.5%

□ 다만, 민간자격은 ‘등록자격’과 ‘등록자격 중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공인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공인자격은 등록자격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공인 절차를 거쳐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등록자격은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등록제’는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허가제를 도입할 만큼 높은 규제 필요성은 없는 경우에 주로 채택되는 제도로서, 행정청의 재정적 운영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허용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임⁷⁾.

□ 현재 민간자격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자격도 존재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문제를 동일명칭 사용 제한을 통해 해

7)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p333

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현행 민간자격 등록제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등록민간자격은 국가가 자격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통용성 등을 심사하여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고, 민간의 자율적인 자격 신설·운영과 시장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명칭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민간자격의 운영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일정한 전문성이나 사회적 통용성이 필요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현행 공인민간자격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동일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개정안의 부칙 제2조⁸⁾와 같이 기존에 동일한 명칭으로 적법하게 등록·운영되어 온 민간자격 중 등록일자가 가장 빠른 자격만 해당 명칭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전체 등록민간자격의 57.5%인 36,222종이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시행으로 상

8) 제2조(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민간자격 명칭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명칭으로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 중 등록일자가 가장 빠른 민간자격을 제외한 모든 민간자격관리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민간자격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당수의 기존 민간자격이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존 자격취득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자격의 운영기간·취득자 수·사회적 인지도·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일자만을 기준으로 명칭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민간자격관리자가 3년의 범위에서 민간자격을 재등록하도록 하고, 재등록 시 주무부장관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민간자격은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재등록 절차가 없어 등록취소 또는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등록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해당 자격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안의 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을 별도의 심사절차로 운영하기보다는 일정 기간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계속 운영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해당 민간자격을 계속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등

록을 갱신하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000호)이 계류되어 있음.

□ 따라서 민간자격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민간의 자율적인 자격 신설·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등록제의 취지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명칭 사용 제한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나 공인민간자격 제도의 활용 등 자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일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존 등록자격의 명칭 변경 기준과 재등록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동일명칭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재등록제는 등록갱신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지식재산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도 선등록자에 대한 명칭의 독점적 지위 부여, 시장 자율성 및 법적 안정성 저해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등록취소 및 벌칙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하거나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민간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관리·운영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등) ①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u><신 설></u>	1. -----방법 및 <u>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u> ----
2. 3. (생략)	2.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③ (생략)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	제39조(벌칙) ----- ----- ----- -----.

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 1의3. (생 략) <u><신 설></u> 2. ~ 5. (생 략)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 자격을 재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관리·운영한 자</u> 2. ~ 5.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하거나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민간자격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계속 관리·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마다 민간자격의 계속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일정 기간마다 재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별도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기보다는, 등록에 일정한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은 경우 등록의 효력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호 의원안(의안번호 제2215000

호)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갱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재등록을 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계속 운영한 경우 최초부터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등록 의무 위반은 당초 적법하게 등록·운영하던 자격이 일정 기간 이후 재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에서, 최초부터 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재등록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하려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재등록 의무의 발생시기와 이행기한 등 형사처벌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사항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등록취소 처분보다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며, 지식재산처는 재등록 거부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